

예 산 총 칙

201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61,662,133	7,849,864
일반회계		234,566,425	7,036,993
특별회계		27,095,708	812,871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20,590	81,618
	수질개선특별회계	15,864,589	475,93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59,000	16,770
	의료급여특별회계	166,990	5,01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2,587,433	77,623
	주택사업특별회계	937,256	28,118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367,152	11,015
	농공단지관리특별회계	212,300	6,36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9,397	1,182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3,477,994	104,340
	기반시설특별회계	163,007	4,89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93,07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